

## 개별소비세 일부개정

\* '15.8월중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. 8.27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 및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(보석·귀금속은 판매장 판매시 포함)

품 목	개선 방안
○ 승용차	· '15.8.27~'15년말까지 30% 인하(세율 5→3.5%)
○ 대용량 가전제품	· '15.8.27~'15년말까지 30% 인하(세율 5→3.5%) · '16.1.1부터 폐지
○ 녹용·로열젤리, 방향용 화장품	· '15.8.27~'15년말까지 30% 인하(세율 7→4.9%) · '16.1.1부터 폐지
○ 가구, 사진기, 시계, 가방 등	· '15.8.27부터 기준가격 상향 조정(200만원 초과 금액의 20% 부과 → 500만원 초과 금액의 20% 부과)  * 가구는 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금액의 20% → 1조당 1,500만원 또는 1개당 1,000만원 초과금액의 20%